

미국의 지방세제

양 인 병

행정안전부 공인회계사

I. 전체 조세체계(국세+지방세)

〈미국의 조세체계〉

연방과 주정부 공동과세	연방세 (Federal tax)	주정부세 (State tax)	기초자치단체세 (Local tax)
유산세, 증여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관세,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자동차세(등록세포함), 재산세, 천연자원세, 기타	재산세, 등록세, 보험세, 기타

-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세(개인소득세가 소득세총액의 약 70%정도임)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9%에 달할 정도로 소득세의 비중이 월등이 높은 나라로서 연방과 주정부가 소득세의 세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는 연방정부차원에서 가장 주요한 세원이 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세원이 된다.
- 미국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근로소득세 이외에 파트너십, 개인회사, S주식회사 그리고 유산신탁기금 등의 소득이 업체 차원이 아닌 소유자차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세의 단순화와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미국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과제이다.

- 연방세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유산, 증여세, 소비세 및 관세와 함께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그리고 실업세 등이 있다. 특히 정규 C법인 주식 회사를 제외한 사업체(pass-through)는 자료신고를 하고 세금신고는 이들 업체의 소유주(주주)가 개인소득세로 한다.
- 크게 보면 소비세와 유산세를 제외한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주정부(State)가 부과하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등 특정제품에 대한 개별판매세로 나뉘고 주정부 차원에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외 기초자치단체(Local)는 재산세를 주로 부과하며 판매세를 주정부 승인을 받아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정치 및 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원세, 등록·취득세, 관광 관련 세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 소득세 중 개인소득세의 경우 일반 근로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파트너십의 동업자 그리고 S 주식회사 등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한편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도 연방정부차원에서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세수가 많지만 이들 세목은 목적세이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반세가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에 가깝다. 사회보장성 세금에는 이 밖에도 실업보험세와 연방정부 공무원연금도 포함된다.

〈중앙과 지방의 소득과세의 비중〉

(2003년 기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
소득세	80.32%	18.05%	1.64%

- 소득세 외에도 연방정부는 소비세를 징수하는데 대상 품목에는 주류, 담배, 유류 등의 기호제품 이외 전화, 환경 파괴 화학품, 항공 및 항만 시설, 도박, 총기류, 대형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그러나 연방소비세 비중은 GDP의 0.6% 정도로 연방세의 주요 세목은 아니다.
- 주정부차원에서도 소득세는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주정부 총 세수 중 42%를 차지하면서 46%의 소비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세는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정부 소비세는 주로 일반판매세(Sales tax)이고 추가로 유류세, 자동차등록세 이외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소비과세의 비중〉

(2003년 기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
소비세	17.55%	64.57%	17.88%

- 유산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당한 면세금액으로 인하여 그 비중이 GDP 대비 0.3%에 불과하다.

- 재산세는 1902년 당시 주세수 가운데 50%이상을 차지하였지만 1940년대에 이르면서 그 비중이 8%이내로 떨어지고 2000년에는 겨우 1.8%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 된다.

〈중앙과 지방의 재산과세의 비중〉

(2003년 기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
재산세	6.48%	5.03%	88.49%

- 주정부의 자동차와 유류관련 세수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주정부의 세수 중 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세와 지방세의 비율〉

(2005년 기준)

국세(연방정부)			지방세(State + Local)		
연방세	사회보장기금	총연방세	주정부	기초정부	총 지방세
41.1%	24.7%	65.8%	20.1%	14.1%	34.2%

II. 지방세의 체계

구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공동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일반판매세, 개별소비세)	유산세, 증여세
주정부세 (State)	-	-	자동차세(등록세포함), 천연자원세 등
기초단체세 (Local)	-	-	재산세, 등록세, 보험세 등

- 미국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독자적인 과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정부(State government)는 과거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던 세제구조를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세의 역할을 낮추는 대신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일반판매세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현재에는 개인소득세와 일반판매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주정부의 지방세제가 소비 및 소득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재산세를 주축으로 하는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State+Local)의 연도별 · 세목별 세입추이〉

(단위: \$1,000,000,000)

연도	총세입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재산세	개별판매세			주세	기타	
					일반 판매세	유류세	담배세		자동차 등록세	기타
1988	439	90	25	130	109	18	5	3	10	49
1995	648	133	31	199	160	26	7	4	15	72
2004	1,025	219	37	326	257	35	13	5	21	111
2008	1,298	301	53	419	302	38	17	6	23	138

- 미국의 주정부들은 세법체계, 세목, 과세물건 및 세율이 서로 상이하며, 그 관할에 있는 지방 정부는 연방 및 주의 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지방세제 운용을 허용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지방세제는 단일의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지방세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하다.
-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의 특징을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정부의 세수입원천 비율(2007년)〉

(단위: \$1,000)

구분	소비세	소득세		기타	총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총합계	351,558,591	267,122,245	53,151,411	85,421,842	757,254,089
비율	46.4%	35.3%	7%	11.3%	100%
AL	4,390,386	3,019,510	505,886	952,532	8,868,314
AK	235,797	-	813,762	2,638,888	3,688,447
AZ	8,027,360	3,747,387	986,170	1,381,759	14,142,676
AR	3,854,708	2,168,441	362,983	1,005,646	7,391,778
CA	40,520,179	53,318,287	11,157,898	9,740,617	114,736,981
CO	3,450,208	4,795,423	479,445	491,907	9,216,983
CN	4,963,682	6,335,078	824,915	723,879	12,847,554
DE	459,209	1,025,146	302,222	1,119,328	2,905,905
FL	30,615,783	-	2,442,516	5,760,408	38,818,707
GA	7,854,746	8,799,415	1,017,187	645,360	18,316,708
HA	3,227,965	1,560,306	100,847	201,381	5,090,499
ID	1,668,798	1,406,462	188,229	273,085	3,536,574
IL	14,310,390	10,469,797	2,936,360	2,861,470	30,578,017
ID	7,752,229	4,615,605	987,111	653,088	14,008,033
IO	2,767,626	2,666,601	325,077	710,448	6,469,752

구분	소비세	소득세		기타	총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KS	3,057,029	2,744,934	527,427	563,969	6,893,359
KE	4,590,295	3,041,535	988,065	1,275,312	9,895,207
LO	5,481,652	3,214,163	752,773	1,524,527	10,973,115
ME	1,690,705	1,358,301	183,852	348,822	3,581,680
MD	5,811,886	6,679,168	782,030	1,821,099	15,094,183
MA	6,005,944	11,399,649	2,106,898	1,178,877	20,691,368
MI	11,602,093	6,442,678	1,786,213	4,017,769	23,848,753
MN	7,302,090	7,230,854	1,183,816	2,051,674	17,768,434
MS	4,090,828	1,401,809	369,205	532,672	6,394,514
MO	4,814,498	4,834,820	390,657	665,712	10,705,687
MT	530,159	832,916	178,707	778,210	2,319,992
NE	1,952,255	1,650,895	213,027	254,855	4,071,032
NV	5,126,064	-	-	1,178,689	6,304,753
NH	734,894	107,452	595,789	736,922	2,175,057
NJ	12,180,803	11,727,192	2,887,137	2,692,730	29,487,862
NM	2,646,901	1,177,918	459,880	1,242,518	5,527,217
NY	19,505,685	34,579,992	5,416,105	3,659,800	63,161,582
NC	8,866,005	10,588,951	1,565,544	1,592,298	22,612,798
ND	808,706	316,894	136,424	520,966	1,782,990
OH	12,832,019	10,031,665	1,431,012	1,819,045	26,113,741
OK	2,939,995	2,774,851	561,375	1,991,385	8,267,606
OR	782,874	5,595,831	405,857	958,300	7,742,862
PE	14,482,543	9,812,726	2,286,527	4,255,861	30,837,657
RI	1,356,587	1,085,600	179,168	144,691	2,766,046
SC	4,577,312	3,239,468	311,902	560,253	8,688,935
SD	1,020,081	-	76,665	169,179	1,265,925
TN	8,363,985	249,145	1,120,422	1,656,485	11,390,037
TX	31,811,384	-	-	8,503,330	40,314,714
UT	2,625,037	2,561,001	398,894	304,491	5,889,423
VT	844,977	581,189	83,362	1,053,978	2,563,506
VA	6,095,942	10,238,776	879,575	1,452,394	18,666,687
WA	13,851,911	-	-	3,840,856	17,692,767
WV	2,213,341	1,360,511	539,136	526,970	4,639,958
WI	6,037,081	6,333,633	923,359	1,188,551	14,482,624
WY	825,964	-	-	1,199,126	2,025,090

■ 개인소득세

- 전체 미국의 세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서 미국의 연방소득세 이외에도 다수의 지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7개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에 불과하다.
- 주정부 소득세의 납세대상은 거주지 원칙으로 거주가 확정되면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
- 아래의 표는 주별 소득세의 세율과 소득구간 및 인적공제를 나타낸 표인데 대부분 연방정부 소득세상의 소득을 주정부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한다. 다만, 로드아일랜드(RI)는 연방 소득세의 일정 비율(25%)을 주정부 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고 테네시(TN)와 뉴햄프셔(NH)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만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그 외 다른 주들은 연방소득세상의 조정된 총소득(AGI)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다양한 증감 항목을 적용한다.
- 개인소득세의 세율구조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주부터 10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주까지 매우 다양하다.

〈주정부의 개인소득세 주요 지표(2008년)〉

(단위: 달러)

State	세율(%)		구간수	소득구간		인적공제		
	최저	최대		최저	최대	독신	부부	자녀
AL	2	5	3	500	3,000	1,500	3,000	300
AK	소득세 없음							
AZ	2.59	4.54	5	10,000	150,000	2,100	4,200	2,300
AR	1	7	6	3,699	31,000	23	46	23
CA	1	9.3	6	6,827	44,815	94	188	294
CO	4.63		1	단일과세		없음		
CN	3	5	2	10,000	10,000	12,750	24,500	0
DE	2.2	5.95	6	5,000	60,000	110	220	110
FL	소득세 없음							
GA	1	6	6	750	7,000	2,700	5,400	3,000
HA	1.4	8.25	9	2,400	48,000	1,040	2,080	1,040
ID	1.6	7.8	8	1,237	24,736	3,500	7,000	3,500
IL	3		1	단일과세		2,000	4,000	2,000
ID	3.4		1	단일과세		1,000	2,000	1,000
IO	0.36	8.98	9	1,379	62,055	40	80	40
KS	3.5	6.45	3	15,000	30,000	2,250	4,500	2,250
KE	2	6	6	3,000	75,000	20	40	20

State	세율(%)		구간수	소득구간		인적공제		
	최저	최대		최저	최대	독신	부부	자녀
LO	2	6	3	12,500	25,000	4,500	9,000	1,000
ME	2	8.5	4	4,849	19,450	2,850	5,700	2,850
MD	2	5.5	7	1,000	500,000	2,400	4,800	2,400
MA	5.3		1	단일과세		4,125	8,250	1,000
MI	4.35		1	단일과세		3,300	6,600	3,300
MN	5.35	7.85	3	21,800	71,591	3,500	7,000	3,500
MS	3	5	3	5,000	10,000	6,000	12,000	1,500
MO	1.5	6	10	1,000	9,000	2,100	4,200	1,200
MT	1	6.9	7	2,500	14,900	2,040	4,080	2,040
NE	2.56	6.84	4	2,400	27,001	113	226	113
NV	소득세 없음							
NH	배당 및 이자소득에만 적용							
NJ	1.4	8.97	6	20,000	500,000	1,000	2,000	1,500
NM	1.7	5.3	4	5,500	16,000	3,500	7,000	3,500
NY	4	6.85	5	8,000	20,000	0	0	1,000
NC	6	7.75	3	12,750	60,000	2,000	4,000	2,000
ND	2.1	5.54	5	31,850	349,701	3,500	7,000	3,500
OH	0.618	6.24	9	5,000	200,000	1,450	2,900	1,450
OK	0.5	5.5	7	1,000	8,701	1,000	2,000	1,000
OR	5	9	3	2,900	7,300	169	338	169
PE	3.07		1	단일과세		없음		
RI	연방소득세의 25%				-	-	-	-
SC	0	7	6	2,670	13,350	3,500	7,000	3,500
SD	소득세 없음							
TN	배당 및 이자소득에만 적용							
TX	소득세 없음							
UT	5		1	단일과세		(*)	(*)	(*)
VT	3.6	9.5	5	32,550	357,700	3,500	7,000	3,500
VA	2	5.75	4	3,000	17,000	930	1,860	930
WA	소득세 없음							
WV	3	6.5	5	10,000	60,000	2,000	4,000	2,000
WI	4.6	6.75	4	9,700	145,460	700	1,400	700
WY	소득세 없음							

(*) 연방기준 공제금액의 6%상당액 또는 연방인적공제액의 75%를 공제함

- 먼저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는 모든 사람의 과세대상 소득에 과세된다. 소득세의 경우 미국도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만 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체와 납세자는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파트너십의 경우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십이 하지만 소득은 개별 파트너에게 배정되고 파트너는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납세 개체와 신고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 납세개체 : 납세의무가 있는 주체로 개인, 일반 주식회사 즉, C 법인 그리고 상속 혹은 유산 신탁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 신고주체 :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등을 다른 개체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신고의무만 있다. 이와 같은 예에는 자영사업자, 파트너십, S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산신탁기금이 있다. S주식회사와 유산 신탁기금은 중복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유산신탁기금은 기금이 보유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 미국 세법 61조는 다음을 소득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 1) 사용료, 수수료 등 유사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
- 2) 영업활동으로 파생되는 총소득
- 3) 재산 거래로 얻은 이득
- 4) 이자

면세대상 이자소득	과세대상 이자소득
다음으로부터의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 •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 미국령에서 발행한 채권 	다음으로부터의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예금 • 회사채권 • 연방정부채권 • 환급세금 •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 •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모든 이자

- 5) 임대료
- 6) 로열티
- 7) 배당

구 분	내 용
일반배당	현금배당, 재산배당, 주식배당(우선주로부터 혹은 현금선택권이 있는 보통주로부터 받은 경우) 및 외국으로부터의 배당으로서 실제 수령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고된다
적격배당	① 요건 : 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으로서 121일의 기간동안 60일 이상 보유한 경우 (우선주는 181일의 기간동안 90일 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금. 다른 사람명의로 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이나 다른 의무가 부여된 배당은 제외한다 ② 세제혜택 : 적격배당금에 대하여는 10% 혹은 15% 세율 적용자는 5%의 세율, 25%이상의 세율 적용자는 15%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목	① 만기가 되지 아니한 생명보험으로부터의 분배금 :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상호투자은행으로부터의 분배금 :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 8) 위자료와 별거료
- 9) 연부금
- 10) 생명보험과 기부금으로부터의 소득
- 11) 양로연금
- 12) 부채소멸로 인한 소득
- 13) 파트너십 총소득의 배당
- 14) 고인에 대한 소득
- 15) 유산과 신탁기금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그러나 과세대상은 법에서 명시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예외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다. 한 예로 불법소득도 소득세법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나 유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 소득은 i. 근로소득, ii. 불로소득, iii. 타인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그리고 iv. 암묵적인 귀속소득의 네 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그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 “근로소득”은 개인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혹은 피고용인을 대신 하여 지불한 모든 금액, 즉 임금, 월급, 팁, 보너스와 커미션 그리고 수수료 등으로 법으로 정한 예외항목을 제외하면 이들 모두 과세된다. 만약 납세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도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사업총소득은 판매대금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하고 투자 및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파트너십과 S주식회사의 과세소득은 회사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고 해당파트너나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이는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하다.
- “불로소득”은 투자수입, 매매, 교환 혹은 기타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 임대나 로열티와 연부금, S주식회사나 파트너십 등의 소득과 이러한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 자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30개 항목에 이르는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총소득에 포함된다. 자산의 매매로 입은 손실은 총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 이득과 상쇄되지 않고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개인의 경우 양도손실을 다른 유형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연 \$3,000이다.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내 용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기부금 수령액	증여세의 과세대상(소득세는 비과세)
상속받은 재산	상속세의 과세대상(소득세는 비과세)
산업재해 보상금	고용주가 종업원의 업무상 부상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산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택프로그램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다수의 선택프로그램을 부여한 경우(예, 단체생명보험, 401(K)연금등)
위탁아에 대한 지급액	복지단체로부터 위탁아의 부양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실제보육비에 사용된 부분만 과세면제)
고용주가 지급한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50,000까지에 상당하는 생명보험료 - 인정되는 의료비, 이사비용 - 종업원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 업무를 위한 숙박·식사비 - 종업원을 위한 연금불입액

-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주정부 중 상당수는 연방소득세의 조정된 총소득(AGI or Adjusted Gross Income)이나 과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방소득세의 조정된 총소득(AGI)과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포괄적 정의)
(-)	비과세소득(exclusion)
=	총소득
(-)	AGI산정을 위한 공제(deduction for AGI)(주1)
=	조정된 총소득(AGI)
(-)	상세공제나 표준공제 중 큰 금액 선택(주2)
(-)	인적공제(individual and dependency exemption)
=	과세표준(taxable income)
(X)	세율(10, 15, 25, 28, 33, 35%의 6단계, 2007년기준으로 세율체계는 매년 변동됨)
=	소득세 산출세액
(-)	공제세액(tax credit)(주3)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세액
	※ 납세자는 1040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네번째달의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함

(주1) 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deduction for AGI)

공 제 항 목	내 용
① 개인연금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
② 학자금대출이자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
③ 의료비저축계좌	의료비 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
④ 이사비용	새로운 직장을 위한 이사비용
⑤ 자영업세의 1/2상당액	자영업자가 납부한 자영업세의 1/2 상당액
⑥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	자영업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100% 상당액
⑦ Keogh, SEP, SIMPLE 등의 각종 연금	자영업자가 Keogh, SEP, SIMPLE 등의 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연금에 불입한 금액
⑧ 정기예금조기해약시의 부과금	정기예금을 조기에 해약할 경우에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의 금액
⑨ 위자료 지급액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⑩ 사업·거래비용	사업이나 거래비용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1) 사업/거래와 같은 활동과 관련 있고(즉, 개인비용이 아니며) 2) 통상적이며 3) 필요하며 4) 합리적 수준의 금액으로 5)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고 6) 납세자의 비용이어야 한다

(주2) 상세공제와 표준공제(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소득과 관련 없는 납세자를 위한 기본적 혜택으로 납세자의 신고 지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공제금액을 공제 받는다.
- “상세공제(itemized deduction)”는 개인적 비용이나 생활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세공제로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상세공제는 표준공제보다 금액이 많을 때 표준공제를 대신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조정된 총소득(AGI)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공제항목	공제금액		
① 의료비	납세자가 지출한 의료보험료와 의료비		
② 세금납부액	주소득세 및 기타의 인정되는 세금납부액		
		공제로 인정되는 세금	공제할 수 없는 세금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소득세 • 지방정부 소득세 • 외국납부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재산세 • 지방정부 재산세 • 외국납부 재산세 ⇒ 주된 거주지, 종된 거주지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동산에 대한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재산세 • 지방정부 재산세 ⇒ 계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만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 재산세(동산분) •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세(예. 중량이나 마력 등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 도로개설 부담금, 상하수도설치부담금, 인도설치 부담금 등 	
③ 이자지급액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투자자금대출이자		
④ 공익성 기부금	자산단체나 적격단체에 기부한 금액		
⑤ 재해 혹은 도난 · 손실	예측하지 못한 화재 등으로부터의 손실 등		
⑥ 기타의 항목	a. AGI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 b. AGI초과기준이 없는 항목		

(주3) 공제세액(tax credit)

항 목	적용대상	이월공제여부	환급가능여부
① 자녀보육비 세액공제	인적세액공제	이월공제 없음	환급대상이 아님
② 연로자 혹은 장애인 세액공제			
③ 자녀 세액공제			
④ 교육비 세액공제			
⑤ 입양비 세액공제		이월 5년	
⑥ 외국납부 세액공제	사업세액공제	소급1년, 이월10년	환급대상이 아님
⑦ 종합세액공제		소급1년, 이월20년	
⑧ 최저한세 세액공제		이월기간 제한없음	
⑨ 저소득 세액공제			
⑩ 초과납부 사회보장세	환급대상 세액공제	이월공제 없음	환급대상

■ 법인소득세

- 미국에서 사업은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으로 조직되어 영위될 수 있다.

〈사업체 형태와 소득신고〉

구분	특징	과세대상
개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사업자가 해당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한 경우로서 개인회사로부터의 소득과 손실을 개인소득세로서 신고하여야 한다 • 순이익이 있을 경우 이 소득은 소유주의 여타 소득과 함께 신고된다. 반면 사업 손실이 있으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된다 • 사업이익은 재투자 목적으로 회사에 유보하여도 과세되며 이자, 배당, 납세자의 임금 등 여타소득은 손실과 상쇄된다. 개인회사 소유주는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고용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건강, 생명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fringe benefit)도 과세된다. 또한 사업과 개인소득세 신고기간도 같아야 한다 	개인 ⇒ 개인소득세 과세
파트너십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조직한 법인화 되지 않은 사업체로서 세금을 신고하는 단체이지만 납세를 하는 단체는 아니다(conduit entity). 즉 파트너십의 소득과 경비·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이전되어 이들이 소득세를 신고한다 	Partner level(조합원) ⇒ 개인소득세 과세

구분	특징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은 매년 Form 1065에 운영 이익 등을 신고하며 이때 각 파트너에게 할당된 소득, 경비, 손실 등을 Schedule K-1(Form 1065)에 신고하고 파트너들은 이를 여타 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에서 신고 및 납세한다 • 파트너십은 일반파트너십과 유한책임파트너십(LLP)으로 나뉘는데 일반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가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이 있고 유한책임파트너십(LLP)에서는 일반 파트너와 최소한 한명의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된다. 유한책임 파트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나 회사 부채에 대하여 자산의 투자와 사전에 약속한 부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LLP는 회계법인과 같이 개인서비스회사로 각 파트너는 자신의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즉, 자신의 행위에는 무한책임이 있지만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한책임이 있다. 이들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 사업이익은 파트너 단계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로부터 자산과 현금을 과세목적상 제한없이 기여 혹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를 대주주인 파트너의 과세연도와 달리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없다 	
주식회사	<p>□ 일반주식회사(C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수익에 대하여 회사를 과세하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주주를 과세하는 형태로 정규 C법인은 15~35%법인세 세율이 별도로 과세되는 납세주체이다. • 회사는 Form1120에 모든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며 회사의 수익은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으면 주주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회사 차원과 주주 차원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p>□ S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주식회사는 C법인과 달리 납세주체가 아닌 전달주체(conduit entity)로 간주된다. S주식회사로 간주되려면 선택을 하여야 하고 주주들이 동의하여야 한다. S주식회사는 Form1120S를 작성, 주주에게 할당된 회사수익, 경비, 공제 등을 신고한다 • S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주주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며 손실도 주주들의 소득과 상쇄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회사에 양도 혹은 회사로부터 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 회사수익은 배당이 되었건 아니면 내부에 유보되었건 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종업원으로 고용된 주주에 대한 부가급부는 회사차원에서는 공제되지만 주주차원에서는 과세된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S 주식회사도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p>□ C법인: 법인단계와 주주단계</p> <p>□ S법인: 주주단계 ⇒ 개인소득세 과세</p>

구분	특징	과세대상
유한책임 회사(L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합친 형태로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만 세금은 파트너십처럼 처리된다 유한회사는 S주식회사와 달리 소유주(member)수가 제한이 없고 무한책임이 있 는 파트너가 없는 무한 파트너십과 유사하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으로 과세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Partner level(조합원)

- 주정부는 역내 주식회사로 존재 혹은 사업할 수 있는 권리나 역외 주식회사가 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주정부 법인세 과표는 연방정부 법인세
상의 총소득 혹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일정한 항목을 추가 내지는 제외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의회가 정하는 연방세법이 주정부 법인세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알라바마, 아칸사스 그리고 미시시피를 제외한 주정부는 주 법인세 산정을 연방
정부의 과세표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 미국에서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을 제외한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며 미시간과 텍
사스는 이와 유사한 사업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46개주 가운데 13개주를 제외
한 모든 주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개 주
를 제외하면 25만 달러 이하이다. 주정부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주에서 6~9%사이에 있
다. 하위 지방정부의 경우 법인세가 허용되는 주는 컨터키, 미시간, 미주리, 뉴욕, 오하이
오, 오리건 6개 주이며 세율은 0.5%(미주리)에서 8%(뉴욕시)에 이른다.

〈연방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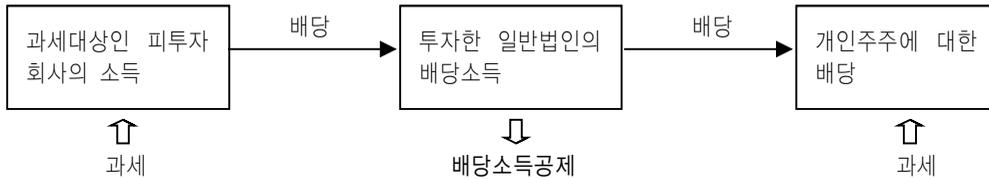
소득	총(판매)수입 - 반환 및 면제
	(-) 판매비(재고+매입경비+노동비용+기타비용-연말재고)
	(+) 배당+이자+임대료+로열티수입+양도수익+기타소득
	= 총소득
공제	(-) 임원보상+임금+보상유지비+약성부채+임차료+세금+이자비용+자선기부금+감가상각비+감모상각비+ 광고비+연금, 이익배분+종업원부가급부+기타공제
	= 순영업손실 및 특별공제 이전의 과세소득
	(-) 순영업손실 + 특별공제 => (주1)
	= 과세표준

(주1) 순영업손실 및 특별공제

- 일반 주식회사(C법인)의 경우 (가)배당수입공제(DRD)와 (나)순영업손실(NOL)에 대한 특별공제가
허용된다.

(가) 배당수입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 DRD는 내국일반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S법인, 조합 및 개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배당소득공제의 목적은 3단계 과세를 방지하는 데 있다



DRD 적용대상 배당금	DRD적용제외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 일반법인으로부터 배당금 • 단기투자기금으로부터의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법인, 조합 혹은 개인이 수령하는 배당금 • 일반투자기금, 부동산투자기금으로부터의 배당금 • 차입금으로 투자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 단기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자

- 공제율은 배당을 수령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지분비율(**)	공제율
80%이상(*)	100%
20%이상(20%~79%)	80%
20미만 혹은 지분율이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	70%

(*) 법인이 종속회사주식의 80%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연결납세를 하게 되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이미 연결과정에서 전액 제거되므로 DRD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DRD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통주의 경우 45일, 우선주의 경우 90일 초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NOL)

- 배당수입공제를 포함한 공제액이 총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순영업손실(NOL)로 간주되고, 당해 연도의 NOL은 2년간 소급되거나 20년간 이월하여 해당연도의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다

〈주정부의 법인세 주요 지표(2008년)〉

(단위: %, 달러)

주정부	세율(C)	구간		구간수	은행세세율	연방세공제
ALABAMA	6.5	—단일세율—		1	6.5	*
ALASKA	1.0 - 9.4	10,000	90,000	10	1.0 - 9.4	
ARIZONA	6.968	—단일세율—		1	6.968	
ARKANSAS	1.0 - 6.5	3,000	100,000	6	1.0 - 6.5	
CALIFORNIA	8.84	—단일세율—		1	10.84	
COLORADO	4.63	—단일세율—		1	4.63	
CONNECTICUT	7.5	—단일세율—		1	7.5	

DELAWARE	8.7	—단일세율—		1	8.7-1.7		
FLORIDA	5.5	—단일세율—		1	5.5		
GEORGIA	6	—단일세율—		1	6		
HAWAII	4.4 - 6.4	25,000		100,000	3	7.92	
IDAHO	7.6	—단일세율—		1	7.6		
ILLINOIS	7.3	—단일세율—		1	7.3		
INDIANA	8.5	—단일세율—		1	8.5		
IOWA	6.0 - 12.0	25,000		250,000	4	5	* (b)
KANSAS	4	—단일세율—		1	2.25		
KENTUCKY	4.0 - 6.0	50,000		100,000	3	—	
LOUISIANA	4.0 - 8.0	25,000		200,000	5	—	*
MAINE	3.5 - 8.93	25,000		250,000	4	1	
MARYLAND	8.3	—단일세율—		1	8.3		
MASSACHUSETTS	9.5	—단일세율—		1	10.5		
MICHIGAN	4.95	—단일세율—		1	38246		
MINNESOTA	9.8	—단일세율—		1	9.8		
MISSISSIPPI	3.0 - 5.0	5,000		10,000	3	3.0 - 5.0	
MISSOURI	6.25	—단일세율—		1	7		* (b)
MONTANA	6.75	—단일세율—		1	6.75		
NEBRASKA	5.58 - 7.81		50,000		2	—	
NEW HAMPSHIRE	8.5	—단일세율—		1	8.5		
NEW JERSEY	9	—단일세율—		1	9		
NEW MEXICO	4.8 - 7.6	500,000		1 million	3	4.8 - 7.6	
NEW YORK	7.5	—단일세율—		1	7.5		
NORTH CAROLINA	6.9	—단일세율—		1	6.9		
NORTH DAKOTA	2.6 - 6.5	3,000		30,000	5	7	*
OHIO	5.1 - 8.5		50,000		2	—	
OKLAHOMA	6	—단일세율—		1	6		
OREGON	6.6	—단일세율—		1	6.6		
PENNSYLVANIA	9.99	—단일세율—		1	—		
RHODE ISLAND	9	—단일세율—		1	9		
SOUTH CAROLINA	5	—단일세율—		1	4.5		
SOUTH DAKOTA	—					6.0-0.25%	
TENNESSEE	6.5	—단일세율—		1	6.5		
TEXAS(a)							
UTAH	5	—단일세율—			5		
VERMONT	6.0 - 8.5	10,000		250,000	3	—	
VIRGINIA	6	—단일세율—		1	6		
WEST VIRGINIA	8.5	—단일세율—		1	8.5		
WISCONSIN	7.9	—단일세율—		1	7.9		

(a) 텍사스는 1%(소매나 도매법인은 0.5%)의 영업세(프랜차이즈세)를 부과

(b) 연방소득세의 50%를 공제

(c) 연방세의 법인세율은 10~35%

■ 소비세

1) 일반판매세

- 소비세는 주정부차원에서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주정부 총 세수 중 46%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이 되고 있다.
-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소비세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전통적 세목으로서 일반판매세와 유류를 비롯한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개별판매세의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일반판매세를 이용하고 있는 주에서 약 2/3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주세의 부가세로서 일반판매세를 부과하므로 같은 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일반판매세 세율이 다를 수 있다.
- 한편 연방정부에서는 일반판매세로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 유류, 석탄, 총기 낚시용품, 대형 자동차, 타이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소매세 혹은 제조업자세와 항공과 수상 등의 시설 이용세, 도박세, 담배 및 주세, 외국기업의 보험상품세 그리고 환경세 등을 제한적으로 부과하며 이들 중 일부 품목은 목적세로 활용된다.
- 미국에서 판매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세금이다.
 - 일반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
 -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 혹은 turnover tax)
 - 제조업자 소비세(manufacturer's excise tax)
 - 판매자세(vendor tax)
-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은 일반소매판매세로서 소비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판매세는 사업용 제품 구입에도 과세된다. 따라서 주정부는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입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부품 판매도 면세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업용 부품은 생산과정에서 그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여야 면세가 가능하다.
-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중간단계에 대한 비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사이의 협약에 따라 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 한편 일반판매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판매세가 제품가격에서 따로 표시되고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외 판매자가 거래 제품별로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지방정부의 일반판매세는 모든 주에서 주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대체로 주가 인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1932년 미시시피 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일반판매세를 처음 도입하였고 그 후 일반판매세가 대체 재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현재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 햄프셔, 오레건의 5개 주를 제외한 45개 주에서 일반판매세를 및 사용세를 과세한다. 알래스카의 경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판매세가 활용되고 있다. 이외 기초자치단체도 일반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 판매세는 주 차원의 판매세에 포함되어 주정부가 과세 행정을 담당한다.
- 일반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혹은 사용에 대하여 과세되며 재화·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과세는 따로 사용세(use tax)로 불린다. 모든 재화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서비스는 법에서 정하는 서비스만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 사용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유형자산이나 과세대상 서비스를 역내에서 사용, 소비, 유통 혹은 저장하는데 적용되는 세금으로 일반판매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소매거래에 부과되므로 재판매를 위한 판매 즉, 도매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와이를 제외한 여타 주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매 판매에만 과세를 한다. 재화의 거래가 재판매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 일반판매세의 신고와 납부와 관련하여 세금신고기일은 주마다 다른데 많은 경우 월별 혹은 분기별 세금신고가 원칙이며 다만 납부세액이 적을 때 분기별 혹은 반년/1년 마다 세금신고를 하기도 한다.

2) 개별판매세

- 일반판매세 이외 지방정부가 특정 소비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를 미국에서는 개별 판매세라고 부른다. 개별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주세, 자동차유류세, 담배세, 보험료세, 유흥세, 전기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세금, 경마세, 도로 사용세 등이 있다.
- 이들 지방소비세 가운데 특히 주세, 담배세 그리고 유류세 등은 주정부 이외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추가로 과세하기도 한다.
- 주별로 보면 개별판매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주는 네바다와 뉴햄프셔,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다코다 등이며 의존도가 낮은 주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이다.

- 개별판매세에 대한 의존도는 대개의 경우 소득세 의존도와 반대로 움직이며 이외 일반판매세의 의존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등록세 등 기타 세목에 의존도가 높은 주는 알래스카, 와이오밍, 텔라웨어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주는 천연자원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다른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 유산세 및 증여세

- 미국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생존 시 혹은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산세 및 증여세 혹은 세대생략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며 일부 주에서는 증여세도 부과한다.
- 특정인이 사망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연방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용품, 주식, 가구, 보석, 은행예금 및 조합의 출자지분과 같은 모든 재산은 사망한 자의 총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아래의 항목은 총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공제항목	내용
부채가액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미지급채무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전에 발생한 재산세 • 사망 전에 발생한 사망한 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미지급액 • 사망일 현재 사망한 자의 개인적 채무
장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상속재산에서는 공제되지만, 1040서식의 최종소득 신고시 혹은 1041서식의 상속재산 소득신고 시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 • 상속재산에서의 공제를 포기한다는 문서를 첨부하면 최종소득신고(서식1040)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관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관리인 수수료, CPA수수료 등 • 대체 안으로서 1041소득신고서에 공제할 수 있음
재해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
공익성 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한 자의 처분의사에 따라 인정되는 단체에 이전한 재산가액
배우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자산가액

- 유산세는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사망자 재산에서 장례비, 부채, 자선단체 기부금, 생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을 제외하고 1976년 이후 증여된 과세대상 증여를 합한 금액이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유산이 배우자에게 양도되면 실질적으로 유산세가 면세된다.

원칙	공정가치
일반원칙	사망일 현재의 공정가치
상속재산관리인이 대체평가일을 선택한 경우	돌중 빠른날의 공정가치[분배일, 대체평가일]

- 총상속재산에서 생전의 증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2,000,000이상인 경우 유산집행인은 유산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집행인 혹은 관리인이 없으면 고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유산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유산 집행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최대 12개월간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세무신고〉

신고 대상	신고서	내용
사망한 자의 최종연도 소득신고	신고서1040	다음연도 4월15일까지(역력사용시)
상속세 신고	신고서 706	사망일로부터 9개월까지
수탁소득 신고	신고서 1041	상속재단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신고

- 증여세도 유산세와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만 면제범위가 약간 더 복잡하고 세금은 1932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증여를 대상으로 과세된다.
- 증여세 납부 의무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지만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수혜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신고는 개인밖에 할 수가 없으며 신탁기금이나 파트너십 혹은 주식회사 등 단체가 행하는 증여는 개별 수혜자나 파트너, 주주가 증여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 연방소득세 신고를 연기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증여세 신고 연기가 가능하지만 증여세 납부 연기는 이로써 가능하지 않고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세금회피를 위하여 증여자산을 낮게 평가하거나, 고의적인 신고회피 그리고 기소시효 등 유산세에 부과되는 규정이 증여세에도 적용된다. ☹️

